

1. 개정이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과 평가 및 지정 취소절차를 마련하고,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자료의 처리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방안 및 자료 제출 요구 방법 등을 규정하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종류 삭제(안 제2조)
- 나. 법률에서 규정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규정사항 삭제(안 제3조)
- 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4조)
- 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5조)
- 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6조)
- 바.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 신설(안 제7조)
- 사.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절차 등 신설(안 제8조)
- 아.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차.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및 통계사업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요구방법 및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첨 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3조까지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 법 20조 및 영 제11조”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지정기준 적합 증명 서류
 2. 인력 운용 현황 1부
 3. 사업운영계획서 1부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평가와 법 제5조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절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지정기준 적합 증명 서류
2. 인력 운용 현황 1부
3. 사업운영계획서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다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 확보
 2.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구축 사업 참여
 3.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 확보
 4. 심뇌혈관질환 전문학회의 수술 또는 시술 인증 의사 확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심혈관질환센터와 뇌혈관질환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유형을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할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정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

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은 평가 및 재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재지정 여부를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

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방법)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갱신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7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7조) 중 “제6조”를 “제4조, 제5조 및 제6조”로,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월 1일 전”을 “7월 1일 전”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기본요건

- 1)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및 연구 역량 확보
- 2) 심뇌혈관질환관리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
- 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 확보
- 4) 심뇌혈관질환관리 관련 등록사업, 조사,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
- 5) 심뇌혈관질환 국가 통계 자료 및 정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

2. 운영기준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 부센터장을 두고 전국적 심뇌혈관질환 관리 협력체계 구축, 각 센터의 운영 및 평가 지원, 연구, 교육, 홍보 등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2)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을 임명한다.

[별표 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기본요건

- 1) 법 제2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전체에 대한 내·외과적 포괄적 진료체계 확보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 확보
- 3)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예방·진료·재활 등 전주기 관리체계 확보
- 4) 관할 시·도, 지역 의료기관, 지역 의사회 등 심뇌혈관질환 협력체계 확보
- 5)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포괄적 진료체계 및 전주기 관리체계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의 안정적 확보

2. 필수 시설 및 인력 기준

- 1) 심혈관 중환자실, 신경계 중환자실, 심뇌혈관 조영실(照影室),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술실 확보
- 2) 심뇌혈관 예방관리 교육 시설, 재활치료 시설 확보
- 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
- 4) 응급심뇌혈관질환 환자의 분류 및 초기 대응 전문의 확보
- 5) 심혈관 중재시술 전문의, 뇌혈관 중재시술 전문의 확보
- 6) 심장 수술 전문의, 뇌수술 전문의 확보
- 7)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재활치료를 위한 전문의 확보
- 8) 환자 등록 관리, 교육 전담간호사, 센터 운영 관리자 및 행정 담당자 확보

3. 치료 역량 기준

- 1)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공휴일·응급 비율
- 2)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수술, 판막수술 합산 건수
- 3)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 4) 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공휴일·응급 비율
- 5) 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응급 비율
- 6) 개두술 건수

비고

1. 치료 역량 기준은 각 목의 질적·양적 지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기관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의료기관	명 칭	의료기관 종류	요양기관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개설 전문과목	허가 병상 수	
중앙 심뇌혈관 질환센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 성명	면허번호	
	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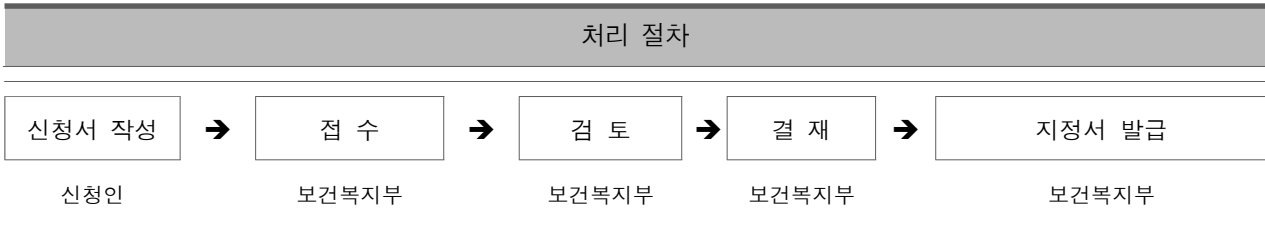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지정기준 적합 증명 서류 2.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인력 운용 현황 1부 3.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위 기관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기관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의료기관	명 칭	의료기관 종류	요양기관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개설 전문과목	허가 병상 수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성명	면허번호	
	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앙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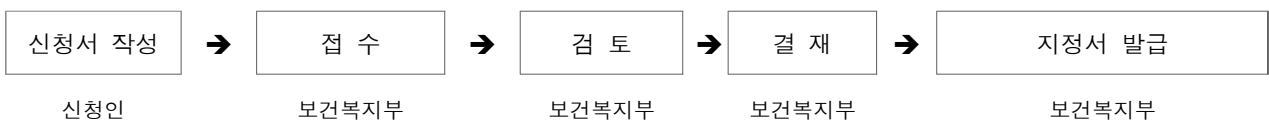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지정기준 적합 증명 서류 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인력 운용 현황 1부 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처리 절차



제 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 정 기 간:

위 기관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별지 제5호서식]

[]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 [] 심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제6조 제3항 관련)

[] 뇌혈관질환센터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의료기관	명 칭	의료기관 종류	요양기관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개설 전문과목	허가 병상 수	
지역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역심혈관 질환센터[] 지역뇌혈관 질환센터[]	지정 유형	면허번호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성명	전화번호	
	지역심혈관질환센터장[] 성명		
	지역뇌혈관질환센터장[] 성명 실무자 성명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질환센터[], 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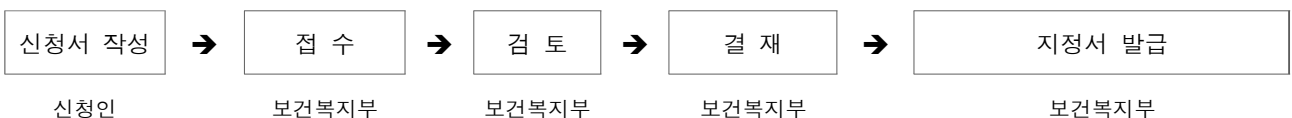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1항 각호 지정기준 적합 증명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리 절차



제 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 []심혈관질환센터 지정서
[]뇌혈관질환센터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 정 유 형:
5. 지 정 기 간:

위 기관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심뇌혈관질환의 종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u> <u>1. 심부전</u> <u>2. 부정맥</u> <u>3. 뇌동맥류</u>	<u><삭 제></u>
<u>제3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u> <u>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삭 제></u>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
다.

1.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 또는 위
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장 또는 위원 스스로 직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
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
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
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
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야
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이하 “연구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조 (생략)

<신설>

제2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① ----- 법 제8조제1항,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4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지정기준 적합 증명 서류

2. 인력 운용 현황 1부

3. 사업운영계획서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평가와 법 제5조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절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5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

표 2와 같다.

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지

정기준 적합 증명 서류

2. 인력 운용 현황 1부

3. 사업운영계획서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 확보
2.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구축 사업 참여
3.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 확보

4. 심뇌혈관질환 전문학회의 수술

또는 시술 인증 의사 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심혈관질환센터와 뇌혈관질환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유형을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할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7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은 평가 및 재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재지정 여부를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
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

정 취소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

<신 설>

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뇌

혈관질환연구사업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

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뇌

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분석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

는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

질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

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방법)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

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신 설>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
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
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
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
램의 설치·갱신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제6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
터(이하 “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을 모두 갖추는 것

가. 심혈관 중환자실

나. 심뇌혈관 조영실(照影室)

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라. 심초음파 검사실

마. 심뇌혈관 재활치료실

바. 심뇌혈관 예방관리실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재활·관리를 위하

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정

하여 고시하는 시설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
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
적 조치

<삭 제>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인력

을 모두 갖추는 것

가. 내과 전문의 3명 이상

나. 신경과 전문의 3명 이상

다. 신경외과 전문의 1명 이상

라. 흉부외과 전문의 2명 이상

마.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바. 예방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재활·관리를 위하

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정

하여 고시하는 인력

3. 운영기준: 심뇌혈관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24시간 전

담하여 진료할 수 있는 진료

체제를 갖추는 것

②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

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운영계획서

3. 재정운용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 지 제2호서식의 심뇌혈관질환 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심뇌혈관

제12조(규제의 재검토) -----

----- 제4조, 제5조, 6조-----

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
 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
 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2023년 7월 1일-----

 ----- 7월 1일 전-----

